

『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4월 23일

나. 발 의 자 : 손홍섭, 박세진, 안장환, 윤종호, 정근수, 정하영
(6인)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4월 26일

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손 홍 섭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,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(안 제6조)
-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·운영(안 제7조)
-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8조~제11조)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2조~제2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22조, 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 8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